

충청북도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1. 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 및 회부일자

- 제출일자 : 2003년 9월 8일
- 회부일자 : 2003년 9월 8일

3. 제안이유

-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재해대책기금의 운용·관리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임

4. 주요골자

- 재해대책기금을 장기예치기금액과 당해연도사용기금액으로 구분하여 기금계좌를 별도로 운용·관리하도록 정함 (제3조 제1항)
- 장기예치기금액은 도 지정금고에 예치·관리하도록 하고 당해연도사용기금액은 기금의 사용 용도에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는 도 지정금고에 관리하도록 하되 사용잔액과 이자는 기금 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·관리하도록 정함 (제3조 제2항, 제3항)

- 기금의 결산보고를 “3월”에서 “80일”로 정함 (제10조)

5. 검토의견

- 충청북도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증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
-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재해대책기금의 운용·관리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서
- 재해대책기금의 「장기예치기금액」과 「당해연도사용기금액」으로 구분하여 효율적으로 운영·관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